[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정기준]

지원자격

산업체 경력이 10 년 이상인 분

- 산업체 경력이란 민간 산업체, 국가기관,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을 의미

<산학협력중점교수의 산업체 경력 인정기준>

○ 다음의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

- 공업, 기타 제조업, 광업, 운송업,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
- 공업, 기타 제조업, 광업, 운송업, 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, 상시 근로자가 10 명 이상인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

○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(시설 및 군경력 포함)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

○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(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)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

※ '「교수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 4 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'의 산업체 경력 관련 조항 준용

-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교원임면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체 경력 10 년 중 3 년의 범위 안에서 경력기준 완화 가능

· 기술 또는 제조기반 창업경험 1 회 이상인 자

※ 창업한 업체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 명 미만이더라도 산업체로 인정

· 기술사, 변호사, 변리사,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

· 석/박사 학위 소지자(산학협력연구과제수행을 위한 산학협력중점교수에 한하며, 석사는 2 년 안에서 경력기준 완화 가능)